



제 432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3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0. 31.
3. 회부연월일 : 2025. 11. 0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관련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 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치료센터¹⁾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2(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u> <u>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u> <u>3.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u> <u>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u> <u>5.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u>

현행	개정안
	<u>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2. 10.>
-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 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 ② 소방청장은 시·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제7조제1항제4호),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제10조의2),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고 있음(제11조).

한편,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추진 하여야 하는데,

소방청은 ① 업무환경 및 현장 안전관리, ②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③ 처우 및 전·현직 소방공무원 복지대책, ④ 순직 예우 및 공상 지원 분야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2025년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차 기본계획(2021 ~ 2025)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정책〉

세부정책과제	관련 내용
소방 의료지원 체계 구축	- 국립소방병원 건립('26년 6월 개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체계 활성화	-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확대('20년 76명 → '25년 128명) - 심신안정실 설치('20: 543개소 → '25. 9: 919개소*)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강화	- '25년 신규 임용자 대상 정신건강 교육 실시 - 전 직원 동료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실시('21년 29,597명 / '22년 6,537명 / '23년 52,630명 / '24년 72,038명)

(자료: 소방청)

〈제3차 기본계획(2026 ~ 2030)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정책〉

세부정책과제	관련 내용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안전망 강화	-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상담사 '25년 128명 ⇒ 268명, 병원 진료비 예산 560백만원('25년)에서 확대) - 재난 출동대원 장기간·주기적 추적관리 등
국립소방병원의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지원 기능 강화	- 소방공무원 치료·질병 연구를 위한 4대 특성화센터(화상·근골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센터) 및 소방의학연구소 운영
마음건강 회복 인프라(소방심신수련원) 확충	- 소방심신수련원 준공('28년, 강릉)에 맞춰 소방활동별(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특화 치유프로그램, 직무복귀 프로그램 마련·운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 소방공무원 스스로 주기적·지속적 건강 측정이 가능한 기록·관리 시스템(혈압·혈당·콜레스테롤 지수 등 측정장비) 도입(건강관리솔루션 제공)

(자료: 소방청)

참고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 규모는 2026년 78억 5,100만원이며 2020년 이후 평균 24.3%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평균증가율)
예산	3,284	3,002	3,317	3,678	3,678	4,299	7,851	
증가율		△8.6	10.5	10.9	0.0	16.9	82.6	24.3

(자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관련 내역사업 추진 체계>

1. 마음건강 설문조사 (선별)			
• 개인별 정신건강 파악 및 치료·관리필요군선별, 보건안전지원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소 소방공무원 ※ 24년 61,807명 응답(94.1%)		‘15년~
2.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 계약에 의한 외부 상담기관을 선정 • 전문 심리상담사가 심리상담, 교육 등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관리	• 소 소방공무원 ※ 24년 79,453건 상담		‘15년~
3.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회복)			
• 설문조사·심리상담 결과, 심신안정 지원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2~4일간 전문치유 프로그램 운영	• 심신안정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 24년 2,531명 참여		‘12년~
4.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치료)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전액 국비 지원	• 병원 검사·진료를 실시한 소방공무원 ※ 24년 7,635건 지원		‘12년~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소방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참혹한 화재·재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쉬우므로²⁾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시행의 안정
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2항
제4호),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임.

2) <최근 10년간('15년~'24년) 자살 소방공무원 중 순직 승인 현황>

(단위: 명)

구 분	자살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 신청 인원 기준			최종 순직 결정 건 ¹⁾⁺²⁾	비 고
		청구	승인 ¹⁾	재심·소송 인정 ²⁾		
계	146	42	23	9	32	
2015년	12	1	0	1	1	행정소송
2016년	6	3	1	2	3	행정소송
2017년	15	3	2		2	
2018년	9	0	0		0	
2019년	14	5	0	5	5	재심, 행정소송
2020년	12	6	3	1	4	행정소송
2021년	17	3	1		1	
2022년	21	7	6		6	
2023년	11	5	5		5	
2024년	17	8	5		5	
2025년	12	1				25.9월말 현재

1)과 2)는 인사처 보유자료(공무원재해보상심의일 기준)로 다수 청구 건의 경우 최종 청구 기준으로 산정

(자료: 소방청)

또한, 이 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집행계획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영 제4조제2항제2호)³⁾,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이후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편성하여 마음건강과 관련한 상담, 회복, 치료 프로그램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난의 유형, 발생 빈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⁴⁾.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개정안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소방청은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현재 경찰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국립소방병원이 개원('26. 6월)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국립소방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소방청이 추진 중인 정책/사업>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사업 ⁵⁾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2015년~)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2012년~) -찾아가는 상담실(2015년~)
3.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2015년~)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찾아가는 상담실(2015년~)
5. 기타	

(자료: 소방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져 관련 예산 확보와 중장기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되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5)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은 [참고] 참조

참고 1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지원사업 개요

(자료: 소방청)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12년 ~ 계속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추진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 제7조
- (주요 사업내용)
 - (마음건강 설문조사) 매년 개인별 설문조사를 통해 마음건강 점검 및 관리·치료필요군 선별, 보건안전지원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찾아가는 상담실)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선정, 전문 상담사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마음건강 교육 등 마음건강 관리지원
 - (스트레스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설문조사, 심리상담 결과 심신안정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2~4일간 전문치유 프로그램 운영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소방공무원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등 전액 국비 지원
- (기대효과)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예방·관리 및 치료 지원

□ 예산 현황(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계		3,284	3,002	3,317	3,678	3,678	4,299	7,851	
마음건강지원	○ 찾아가는 상담실	1,724	1,772	2,087	2,408	2,408	3,014	6,204	지방비 매칭 (50:50)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1,000	690	690	690	690	690	940	지방비 매칭 (50:50)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560	520	520	560	560	560	672	전액국비
	○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	20	20	20	20	35	35	전액국비

참고 2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 사업실적 등 통계

(자료: 소방청)

□ 최근 5년간('21년~'25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 주요 정신건강 문제

연도	실시 인원(명)	PTSD(관리·치료 필요군)		우울(관리·치료 필요군)		자살위험(관리 필요군)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21년	53,980	3,093	5.7	2,379	4.4	2,390	4.4
2022년	54,056	4,364	8.1	4,129	7.6	2,906	5.4
2023년	52,802	3,412	6.5	3,323	6.3	2,597	4.9
2024년	61,087	4,375	7.2	3,937	6.5	3,141	5.2
2025년	61,517	3,887	6.3	3,556	5.8	2,864	4.7

○ 외상사건 노출경험

연도	실시인원(명)	최근 1년간(회)	1년간 12회 이상(%)	1년간 15회 이상(%)
2021년	53,980	6.3	12.9	10.2
2022년	54,056	5.9	13.1	10.3
2023년	52,802	5.9	13.7	10.7
2024년	61,087	5.8	13.5	10.5
2025년	61,517	6.0	14.2	11.2

□ 최근 5년간('20년~'24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실적

(단위 :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8,026	53,374	63,416	70,759	79,453

※ 개인이 반복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실적은 상담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됨

□ 최근 5년간('20년~'24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80	2,753	2,741	2,605	2,531

□ 최근 5년간('20년~'24년)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실적

(단위 : 건, 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62	367,136	7,454	488,465	7,932	556,361	8,034	559,887	7,635	551,016

참고 3

소방전문 치료센터 개요

(자료: 소방청)

□ 근 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및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 지정현황

- 경찰병원

① 소방공무원의 진료, ②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③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④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의 업무 담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나, 현재 경찰병원을 제외하고는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음.

※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추진 중(’26. 6월 정식개원 예정)